

부 록

1. 선거기사심의기준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3.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4. 심의대상 매체현황
5. 색 인

제1장 총 칙

제1조(공정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2조(형평성) 언론사는 선거기사의 편집 및 기사배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객관성)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4조(공익성) 언론사는 언론의 공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 언론사는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기 사

제6조(사실보도) ①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실과 의견의 구별) 언론사는 선거기사에서 사실보도와 의견을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6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③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설기사는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해

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언론사는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보도할 경우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용보도)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거나 개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피하여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뷰 기사) ①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②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기고 등) ①언론사는 선거에 관련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할 경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집기획기사)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대담·토론기사)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간의 대담, 토론 기사를 다룰 때에는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표제 및 사진

제14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진게재) ①언론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게재 시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언론사는 사진게재에 있어 어떠한 변형이나 재구성을 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사는 선거유세장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참가 인원이나 내용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장 광 고

제16조(의견광고) 언론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①언론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 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언론사는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또는 상징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권리구제

제18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사는 선거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권) 언론사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이 명백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등)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제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 등)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하 “추천단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추천정당”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언론인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⑤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임기 등) ①심의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와 관련 설치되는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

②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를 재위촉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에 정·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한다.

③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심의

2.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규정된 선거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정요구사항 심의

3.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②심의위원회는 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에 의거 선거기사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기사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하여 공표한다.

제7조(회의 등)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심의위원장 또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①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대우)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심의 및 시정

제10조(심의) ①선거기사의 심의기준은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에 관한 기준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정기간행물 제출) 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기간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

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구독료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구독료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정기간행물 제출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 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 ①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기사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①심의위원회가 제12조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의견진술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①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기간행물에 대한 제12조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선거법 및 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②언론중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요구사항) ①후보자는 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및 제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기사 전문과 시정요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장은 후보자로부터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2항의 심의를 한 결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시정요구사항의 심의절차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반론보도청구

제16조(반론보도청구) ①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언론사가 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반론보도청구 회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③심의위원장은 회부서를 접수하는 즉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반론보도청구의 양측 당사자 등의 심의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는 구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결) ①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언론사 등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선거법 제8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문은 참석 심의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언론중재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선거기사관련 반론보도청구사건 심의절차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언론중재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특례절차)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의사, 관리, 홍보 등의 사무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20조(예산)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해산) 심의위원회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필요한 업무를 완료하고 해산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정기간행물의선거보도에대한반론보도청구사건심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시 정 요 구 서			
()				
시정요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시정요구대상	⑤정기간행물명		⑥대표자 성명	
	⑦보 도 일 자 및 지면		⑧소 재 지	
	⑨보 도 내 용		⑩전 화 번 호	
시정요구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정요구인 :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보도기사 전문			수 수 료	
			없 음	

210mm x 297mm
(백상지 80g/m²)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반론보도청구회부서			처 리 시 간
				48시간
청 구 인	①성 명 (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②주 소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⑦성 명 (단체명 또는 언론사명)		⑧주 소	
	⑨대표자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소 재 지		⑫전 화 번 호	
반 론 보 도 청 구 대 상	⑬정기간행물명			
	⑭보도일자 및 지면			
	⑮보 도 내 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4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합니다. 년 월 일 반론보도청구회부인: (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 서류 : 1. 반론보도청구인의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3. 해당 사건 취재경위 등을 포함한 언론사의 의견 (언론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4. 보도기사 전문				수 수 료
				없 음

395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 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 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 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 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때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 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인터넷·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제137조(정당·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자지방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 재선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⑥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⑨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일간지 108종, 주간지 276종, 월간지 12종, 뉴스통신 2종 : 총 398종

1) 일간지 : 108종

구 분	매 체 명
중앙일간지 (26)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칸,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데일리노컷뉴스, 더데일리포커스, 데일리줌, 메트로, 에이엠세븐
지역일간지 (82)	서울(8) 내외일보, 서울일보, 시민일보, 아시아일보, 아시아투데이, 일간투데이, 해동일보, 글로벌타임스
	부산(2)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구(5)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대구시민일보, 영남일보
	인천(4) 경도신문, 기호일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광주(12)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남도일보, 대한일보, 무등일보, 아침신문(구 서남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일보, 호남신문
	대전(6)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울산(4)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경기(13)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매일, 경인일보,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현대일보, 매일신보
	강원(2)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북(5)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매일
	전북(8)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일신문
	전남(1) 전광일보
	경북(4)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경남(4)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일보
	제주(4)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타임스, 한라일보

2) 주간지 : 276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주간지 (22)	미래한국, 오마이뉴스, 시민사회신문, 중앙선데이, 민주신문, 월요신문, 일요서울, 일요시사, 일요신문, 주간현대, 시사뉴스, 시사포커스, 시사in, 뉴스시אים, 뉴스메이커, 시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한겨레21, 매경ECONOMY, ECONOMIC REVIEW
지역주간지 (254)	서울(62) 금천뉴스,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강서양천신문, 경동신문, 구로오늘신문, 구로타임즈, 노원신문, 뉴스인, 동작포커스, 마포타임즈,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울강북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남부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울송파신문, 서초구민신문, 성동신문, 성북신문, 시정신문, 양천신문, 관악신문, 영등포신문, 용산신문, 종로신문, 종로저널, 주간 강남신문, 주간 노원우리신문, 주간 동북신문, 주간 동작신문, 주간 마포신문, 주간 서대문신문, 주간 서부신문, 주간 은평신문, 주간 중랑신문,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내일신문 23개
	부산(1) 부산여성신문
	대구(3) 대구달성신문, 대구푸른신문, 팔공신문
	인천(3) 경인열린신문, 남동신문, 연수저널
	광주(1) 시민의소리
	울산(2) 울산여성신문, 울산종합신문
	경기(30) 고양신문, 고양파주자치신문, 과천시대신문, 군포신문, 김포뉴스, 김포신문, 동부교차로저널, 미래신문, 반월신문, 부천신문, 부천포커스, 세종신문, 시흥자치신문, 안산신문, 안산정론신문, 안양광역신문, 안양시민신문, 양평신문, 여주신문, 연천저널, 용인시민신문, 용인신문, 이천설봉신문, 이천신문, 자치안성, 파주저널, 평택시민신문, 포천신문, 강북신문, 화성오산신문
	강원(10) 강릉신문, 강원리뷰, 강원북부신문, 강원신문, 삼척동해신문, 설악신문, 영월신문, 원주투데이, 태백신문, 홍천신문
	충북(10) 목요신문, 보은미래신문, 옥천신문, 음성뉴스, 제천신문, 진천시사신문, 충북뉴스, 충주신문, 충청리뷰, 증평괴산저널
	충남(16) 공주신문, 금산신문, 뉴스서천, 당진시대, 맏빛신문, 보령신문, 연기신문, 온양신문, 충남시사신문, 천안신문, 청양신문, 홍성신문, 서해안신문, 놀이신문, 예산신문, 태안신문
	전북(17) 고창신문, 고창코리아, 군산뉴스, 군산미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남원시민신문, 부안독립신문, 부안서림신문, 부안저널, 순창신문,

구 분	매 체 명
지역주간지	완주신문, 익산신문, 임실신문, 정부고신문, 정읍신문, 진안신문, 김제신문
	전남(33) 고흥타임즈, 곡성신문, 광양신문, 나주투데이, 남도 문화저널, 남해안신문, 담양신문, 담양주간신문, 목포투데이, 무안신문, 순천시민의신문, 큰여수신문, 여수신문, 영광21, 영암신문, 예향진도신문, 완도타임스, 장성군민신문, 전남타임스, 주간 강진신문, 주간 나주신문, 주간 순천신문, 주간 영광신문, 주간 완도신문, 주간 장흥신문, 주간 함평신문, 주간 해남신문, 주간 해진신문, 주간 화순신문, 진도타임스, 청해진신문, 향도신문, 화순군민신문
	경북(26) 경북자치신문, 중부신문, 경산신문, 경산자치신문, 경주신문, 고령신문, 고향신문, 군위신문, 김천신문, 삼백신문, 상주시민신문, 상주신문, 성주신문, 성주자치신문, 안동신문, 영남신문, 영덕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영천)시민신문, 예천신문, 울진신문, 울진21, 의성신문, 청도신문, 칠곡신문
	경남(39) 거제중앙신문, 거제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신문, 거창신보, 경남여성신문, 경서신문, 고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김해신문, 남해신문, 남해시대, 뉴스주간함양, The조은신문, 미리벌신문, 밀양시민신문, 밀양신문, 사천신문, 새거제, 영남매일, 서경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신문, 와룡신문, 의령신문, 아림신문, 주간한산신문, 주간함양신문, 진주신문, 진해신문, 창녕신문, 통영신문, 하동신문, 한국시사정보신문, 함안군민신문, 함안신문, 함안아라신문, 합천신문, 황강신문
	제주(1) 서귀포신문

3) 월간지 : 12종

구 분	매 체 명
종합월간지(7)	말,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 뉴스포커스, 경제풍월, 한국논단
여성지(5)	여성동아, 여성중앙, 레이디경향, 우먼센스, 주부생활

4) 뉴스통신 : 2종 (연합뉴스, 뉴시스)

1) 결정유형별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비 고	면
자 체 심 의	경고문 게재	2008자심6	월요신문		60
	경고문 게재	2008자심9	경향신문		64
	경고문 게재	2008자심10	성주자치신문		68
	경고문 게재	2008자심13	월요신문		72
	경고문 게재	2008자심15	주간현대		75
	경고문 게재	2008자심16	주간현대		80
	경고문 게재	2008자심17	뉴스인		84
	경고문 게재	2008자심19	상주신문		87
	경고문 게재	2008자심27	아림신문		92
	경고문 게재	2008자심28	부안저널		95
	경고문 게재	2008자심29	종로신문		99
	경고문 게재	2008자심30	남도일보		102
	경고문 게재	2008자심31	남도일보		106
	경고문 게재	2008자심32	시민일보		110
	경고문 게재	2008자심33	시민일보		113
	경고문 게재	2008자심34	전북도민일보		116
	경고문 게재	2008자심40	월요신문		122
	경고문 게재	2008자심43	성주신문		126
	경고문 게재	2008자심44	부안저널		130
	경고문 게재	2008자심49	민주신문		134
	경고문 게재	2008자심53	중앙SUNDAY		137
	경고문 게재	2008자심54	나주투데이		140
	경고문 게재	2008자심60	호남일보		144
	경고문 게재	2008자심61	호남일보		148
	경고문 게재	2008자심63	주간현대		151
	경고문 게재	2008자심64	레이디경향		155
	경고문 게재	2008자심65	여성동아		159
	경고문 게재	2008자심68	경상매일신문		174
	경고문 게재	2008자심71	뉴스사이즈		176
	경고문 게재	2008자심72	뉴스메이커		179
	경고문 게재	2008자심73	부안저널		184
	경고문 게재	2008자심74	부안저널		188
	경고문 게재	2008자심78	영광21		191
	경고문 게재	2008자심79	영주신문		195
	경고문 게재	2008자심80	아시아일보		198
	경고문 게재	2008자심84	금천뉴스		205
	경고문 게재	2008자심86	주간현대		208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비 고	면
자 체 심 의	경고문 게재	2008자심87	중부신문		211
	경고문 게재	2008자심88	경북도민일보		213
	경고문 게재	2008자심89	수도권일보		217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35	서남일보	2008재심1 관련	118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66	우먼센스	2008재심3 관련	164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67	주부생활	2008재심4 관련	169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83	뉴스메이커	2008재심5 관련	200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90	월간 말	2008재심6 관련	220
	경 고	2008자심1	울산매일		226
	경 고	2008자심3	주간현대		229
	경 고	2008자심4	중부일보		233
	경 고	2008자심8	충청일보		235
	경 고	2008자심11	상주신문		238
	경 고	2008자심12	월요신문		240
	경 고	2008자심18	상주신문		242
	경 고	2008자심20	서남일보		244
	경 고	2008자심21	시민일보		246
	경 고	2008자심22	전북도민일보		248
	경 고	2008자심23	전라일보		250
	경 고	2008자심26	강원도민일보		252
	경 고	2008자심36	아시아투데이		254
	경 고	2008자심37	우리일보		256
	경 고	2008자심38	인천신문		258
	경 고	2008자심39	일간투데이		260
	경 고	2008자심41	경북일보		263
	경 고	2008자심42	강원일보		264
	경 고	2008자심45	새전북신문		266
	경 고	2008자심46	경북매일		268
	경 고	2008자심47	매일신문		269
	경 고	2008자심48	영남일보		270
	경 고	2008자심50	괴산증평신문		271
	경 고	2008자심51	예산신문		275
	경 고	2008자심52	익산신문		279
	경 고	2008자심55	경동신문		282
	경 고	2008자심56	중도일보		285
	경 고	2008자심57	시사저널		287
	경 고	2008자심58	월간중앙		289
	경 고	2008자심59	전남일보		290
	경 고	2008자심62	충남일보		294
	경 고	2008자심69	광주매일신문		296
	경 고	2008자심70	전북일보		307
	경 고	2008자심75	호남매일		313
	경 고	2008자심76	남해신문		316
	경 고	2008자심77	영암신문		318
	경 고	2008자심82	충청투데이		320
	경 고	2008자심85	담양주간신문		323

구 분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언 론 사 명	비 고	면
자 체 심 의	주 의	2008자심2	울산제일일보		325
	주 의	2008자심5	무등일보		327
	주 의	2008자심7	경기신문		329
	주 의	2008자심14	오마이뉴스		330
	주 의	2008자심24	한겨레		333
	주 의	2008자심25	경산자치신문		335
	주 의	2008자심81	내일신문		336
시정요구심의	사과문 게재(재심)	2008시심2	김태홍/세계일보	2008재심2 관련	338
	정정보도문 게재	2008시심9	배진교/한국일보		343
	경고문 게재	2008시심1	강기갑/경남일보		346
	경 고	2008시심5	김희선/시민일보		350
	경 고	2008시심10	임성대/당진시대		353
	권 고	2008시심7	김재천/동아일보		364
	기 각	2008시심3	오성섭/중앙일보		367
	기 각	2008시심4	오성섭/중부매일		370
	각 하	2008시심8	고경화/데일리서프라이즈	인터넷신문	372
	각 하	2008시심11	한경남/브레이크뉴스	인터넷신문	375
	취 하	2008시심6	김동철/광산저널		378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취 하	2008반심1	이낙연/호남일보		381
재 심 청 구	인 용	2008재심1	아침신문(구 서남일보)	결정취소	119
	일부 인용	2008재심2	세계일보	사과문안 및 보도면 변경	339
	일부 인용	2008재심5	뉴스메이커	게재면 변경	200
	기 각	2008재심3	우먼센스		164
	기 각	2008재심4	주부생활		169
	기 각	2008재심6	월간말		220

2) 언론사별

언론사명	결정유형	의결번호	비고	면
강원도민일보	경고	2008자심26		252
강원일보	경고	2008자심42		264
경기신문	주의	2008자심7		329
경남일보	경고문 게재	2008시심1	시정요구인 : 강기갑	346
경동신문	경고	2008자심55		282
경북도민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88		213
경북매일	경고	2008자심46		268
경북일보	경고	2008자심41		263
경산차치신문	주의	2008자심25		335
경상매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68		174
경향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9		64
광산저널	취하	2008시심6	시정요구인 : 김동철	378
광주매일신문	경고	2008자심69		296
괴산증평신문	경고	2008자심50		271
금천뉴스	경고문 게재	2008자심84		205
나주투데이	경고문 게재	2008자심54		140
남도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30		102
	경고문 게재	2008자심31		106
남해신문	경고	2008자심76		316
내일신문	주의	2008자심81		336
뉴스메이커	경고문 게재	2008자심72		179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83		200
	일부인용	2008재심5	게재면 변경	200
뉴스인	경고문 게재	2008자심17		84
뉴시스아이즈	경고문 게재	2008자심71		176
담양주간신문	경고	2008자심85		323
당진시대	경고	2008시심10	시정요구인 : 임성대	353
데일리서프라이즈	각하	2008시심8	시정요구인 : 고경화	372
동아일보	권고	2008시심7	시정요구인 : 김재천	364
레이디경향	경고문 게재	2008자심64		155
매일신문	경고	2008자심47		269
무등일보	주의	2008자심5		327
민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49		134
부안저널	경고문 게재	2008자심28		95
	경고문 게재	2008자심44		130
	경고문 게재	2008자심73		184
	경고문 게재	2008자심74		188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비 고	면
브레이크뉴스	각 하	2008시심11	시정요구인 : 한경남	375
상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19		87
	경 고	2008자심18		242
새전북신문	경 고	2008자심45		266
서남일보 (현 아침신문)	경 고	2008자심20		244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35		118
	인 용	2008재심1	결정취소	119
성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43		126
	경 고	2008자심11		238
성주자치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10		68
세계일보	사과문 게재(재심)	2008시심2	시정요구인 : 김태홍	338
	일부 인용	2008재심2	사과문안 및 보도면 변경	339
수도권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89		217
시민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32		110
	경고문 게재	2008자심33		113
	경 고	2008시심5	시정요구인 : 김희선	350
	경 고	2008자심21		246
시사저널	경 고	2008자심57		287
아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27		92
아시아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80		198
아시아투데이	경 고	2008자심36		254
아침신문 (구 서남일보)	경 고	2008자심20		244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35		118
	인 용	2008재심1	결정취소	119
여성동아	경고문 게재	2008자심65		159
영광21	경고문 게재	2008자심78		191
영남일보	경 고	2008자심48		270
영암신문	경 고	2008자심77		318
영주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79		195
예산신문	경 고	2008자심51		275
오마이뉴스	주 의	2008자심14		330
우리일보	경 고	2008자심37		256
우먼센스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66		164
	기 각	2008재심3		164
울산매일	경 고	2008자심1		226
울산제일일보	주 의	2008자심2		325
월간 말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90		220
	기 각	2008재심6		220
월간중앙	경 고	2008자심58		289
월요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6		60

언 론 사 명	결 정 유 형	의 결 번 호	비 고	면
월요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13		72
	경고문 게재	2008자심40		122
	경 고	2008자심12		240
익산신문	경 고	2008자심52		279
인천신문	경 고	2008자심38		258
일간투데이	경 고	2008자심39		260
전남일보	경 고	2008자심59		290
전라일보	경 고	2008자심23		250
전북도민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34		116
	경 고	2008자심22		248
전북일보	경 고	2008자심70		307
종로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29		99
주간현대	경고문 게재	2008자심15		75
	경고문 게재	2008자심16		80
	경고문 게재	2008자심63		151
	경고문 게재	2008자심86		208
	경 고	2008자심3		229
주부생활	경고문 게재(재심)	2008자심67		169
	기 각	2008재심4		169
중도일보	경 고	2008자심56		285
중부매일	기 각	2008시심4	시정요구인 : 오성섭	370
중부신문	경고문 게재	2008자심87		211
중부일보	경 고	2008자심4		233
중앙일보	기 각	2008시심3	시정요구인 : 오성섭	367
중앙SUNDAY	경고문 게재	2008자심53		137
충남일보	경 고	2008자심62		294
충청일보	경 고	2008자심8		235
충청투데이	경 고	2008자심82		320
한겨레	주 의	2008자심24		333
한국일보	정정보도문 게재	2008시심9	시정요구인 : 배진교	343
호남매일	경 고	2008자심75		313
호남일보	경고문 게재	2008자심60		144
	경고문 게재	2008자심61		148
	취 하	2008반심1	청구인 : 이낙연	381